

5. 화재예방 및 진압
6. 의용소방대 운영지도
7. 소방검사 및 위험물 검사
8. 병사업부(예비군 포함)
9. 공익근무요원 관련업무 총괄
10. 그 밖에 민방위, 소방에 관한 사항

제19조(계설치 및 사무분장) ① 실·과 밑에 그 하부조직으로 계를 둔다.

② 계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3 】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5. 1.

제출자 : 양주군수

제안이유

- '95상반기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대비하여 집행기관의 장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장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 정원운용에 있어 정원관리권자인 자치단체장의 행정수행에 있어 탄력성을 유지하고 자치단체장의 공무원 증원등에 대한 지방의회의 통제로 예산절감, 주민복지증진등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의 바람직한 역할관계를 설정하고,
- 기존의 정원관련 법령의 일원화로 제도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정부의 간소한

조직운영 방침의 지방적 구현과 건실한 지방자치제 정착에 주안하는등 지방조직의 자율관리 능력제고 및 지역실정에 맞는 조직을 운용하기 위한 규정이

- 대통령령 제14480호 ('95. 1. 1일 시행)로 제정 공포되어 동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었기 때문임.

주요골자

가. 내무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의 규정을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규정 (안 제2조)

※ 기 준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532명)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정함.

1. 군 본 청 : 253명

2. 직속기관 : 68명

3. 사 업 소 : 23명

4. 읍 · 면 : 188명

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안 부칙제2조)

◦ 종전에 이영시행 당시 책정된 정원은 이영에의 책정된 것으로 간주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103조(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을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4480호)

제21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본 청
2. 직속기관
3. 출장소
4. 사업소
5. 읍·면·동 및 그 출장소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양주군조례 제 호

####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21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양주군의 본청·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 본 청 : 253명
2. 직속기관 : 68명
3. 사 업 소 : 23명
4. 읍 · 면 : 188명

제3조(직급별 정원의규정) 군의 본청 · 소속기관 및 읍 · 면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군의 정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책정된 것으로 본다.

### 【 4 】 양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5. 1. .

제출자 : 양 주 군 수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대통령령제14480호로 '95년 1월 1일부터 개정 공포되어
-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 되었기 때문임.

주요골자

- 가.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직급별 정원은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으로 정하는 현 행의 규정을 → “군수가 따로 정한다.”로 개정 (안 제3조)